신청접수번호: m-RAPA-2103-1263 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1. 공사내용			
공사명	포항 펜타시티 A3블럭 대방엘리움		
공사 장소(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A3 블록		
공사의 종류	공동주택(V)건축물()도시철도()		
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상세협의결과 참조		
중계장치 설치 위치	상세협의결과 참조		
접지단자 위치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		
전원단자 위치와 용량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총용량4kW 이상, 교류 220V, 단자 3개 이상)		
3.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에 대한 사업주체의 협의결과 게시 방법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해당없음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협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			
4.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①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부 제공 ② 착공설계 신청 전 설계도면 확인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중계설비) ③ 건축물의 착공/준공일정 및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 등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5.기타 협의사항	상세협의결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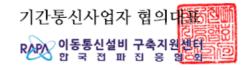
※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첨부]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

상기 협의내용 이외의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상호 협의하였음.

2021년 03월 15일

구분	법인/단체명(상호)	대표자(성명)
건축주	대방산업개발 주식회 사	윤대인
대리인	(주)일신이앤드씨	홍영남 (왕왕의합



상세 협의 결과

1.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해당없음
2. 중계장치 설치 위치
1. 지하2층 : 102동 통신실, 103동 통신실
3. 기타 협의사항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의사항>>

※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는 상호협의결과서 내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치 위치와 도면 상의 위치가 일치하는 지 확인 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계도서가 시공사(건설사)에게 반드시 전달 되어, 건축물에 선로설비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